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9. 12. 13.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9년 11월 13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19년 11월 20일
- 라. 상정일자: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19. 12. 5.)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장종연)

- 가. 제안이유
  -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및 구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사용료의 반환 조건이 타 지역 수련시설에 비해 다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현실성 있는 반환 조건으로 개정(안 제14조)
  - 신규 설치된 카라반 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신설(안 별표2)
  - 용어의 통일과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화된 용어로 정비  
(안 제7조, 안 제1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 야영장의 이용승인은 신청 순으로 하고, 1개월 전부터 이용 신청하도록 하는 등 이용신청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 안 제12조에서는 시설 사용료 기준인원 및 카라반 사용료를 추가하는 등 별표2를 개정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는 5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을 반환하는 등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의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입법 체계나 자구에 문제점은 없음.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72 호
----------	---------

제출연월일: 2019. 11.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및 구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용료의 반환 조건이 타 지역 수련시설에 비해 다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현실성 있는 반환 조건으로 완화하여 개정(안 14조)
- 나. 신규 설치된 카라반 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신설(별표2)
- 다. 용어의 통일과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화된 용어로 정비(안 제7조, 안 제1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2019. 10. 10. ~ 10. 30./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작성”을 “작성·제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 수련 활동”을 “청소년수련활동”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청소년야영장의 이용승인은 예약순서대로 하고”를 “구청장은 제7조제2항의 이용 신청 순서대로 이용 승인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청소년 수련활동”과 제2호의 “학생 수련활동”을 각각 “청소년수련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등포구민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단체 또는”을 “영등포구 구민 및 단체, 또는 청소년야영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2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을 “1개월 전부터 신청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사전 예약할”을 “신청할”로 한다.

제14조 중 “납부받은”을 “납부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람이”를 “자가”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1개월”을 “5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5일”을 “3일”로, “50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2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별표1 중 기준인원란의 “8명”을 “6명”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시설 사용료

1. 일반객실

(단위:원)

시 기	실	영등포구민 (영등포구 소재 공공기관·단체) 및 청소년야영장 소재지 주민	타지역 주민	비 고
성수기 및 주말	4인	50,000	85,000	성수기: 7.15.~8.25.
	6인	80,000	136,000	
비 수 기 (성수기, 주말 외)	4인	40,000	68,000	주말: 금~토 및 공휴일 전일
	6인	60,000	102,000	

※ 비고

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를 말한다.  
(성수기 기준 변동 시 예약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
2. “주말”이란 금요일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
3. 사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한다.
4. 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입실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5. 침구류(이불, 요, 베개 등)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1세트당 5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6. 다목적실 및 세미나실 사용료는 청소년단체의 수련활동 극대화 및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2. 제1호 외의 시설

(단위:원)

시 설	구 분	기 준	이 용 요 금	비 고
야영장(데크) 야영장(글램핑) 야영장(카라반)	개소	1박	10,000 50,000 50,000	타지역 주민 17,000 타지역 주민 85,000 타지역 주민 85,000
다목적실	실	전 일 4시간 2시간	200,000 100,000 60,000	
세미나실	실	전 일 4시간 2시간	120,000 60,000 40,000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라 한다) 단체 또는 소재지 주민 및 단체의 이용

5. (생략)

⑤ 청소년야영장의 이용신청은 개인 및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단, 청소년 단체는 6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성수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받은 사용료 중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1. 2. (생략)

3.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야영장 사용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 가. 사용일 1개월 전까지: 전액
- 나. 사용일 15일 전까지: 50퍼센트
- 다. 사용일 1일 전까지: 20퍼센트

<신설>

5. (현행과 같음)

⑤ -----  
-----  
-- 1개월 전부터 신청할 -----  
-- 신청할 -----  
-----.

제14조(사용료의 반환) -----  
-----  
---- 납부 받은 -----  
-----.

1. 2. (현행과 같음)

3. -----  
----- 자가 -----  
-----

- 가. ---- 5일 -----
- 나. ---- 3일 ----- 80퍼센트
- 다. ----- 50퍼센트
- 라. 사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별표1】**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이용 정원**

구분	면적	객실 수	기준 인원	추가 인원	비고
객실	48.6㎡	1실	8명	2명	
	33.7㎡	10실	4명	2명	

※ 기준 인원이 초과할 경우 추가인원 내에서만 입실가능

**【별표2】**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시설 사용료**

1. 일반객실

(단위:원)

시 기	실	영등포구민 (영등포구 소재 공공기관·단체) 및 청소년야영장 소재지 주민	타지역 주민	비 고
성수기 및 주말	4인	50,000	85,000	성수기: 7.15.~8.25.  주말: 금~토 및 공휴일 전일
	8인	80,000	136,000	
비 수 기 (성수기, 주말 외)	4인	40,000	68,000	
	8인	60,000	102,000	

※ 비고

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를 말한다.(성수기 기준 변동 시 예약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
2. “주말”이란 금요일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전 날을 말한다.

**【별표1】**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이용 정원**

구분	면적	객실 수	기준 인원	추가 인원	비고
객실	48.6㎡	1실	6명	2명	
	33.7㎡	10실	4명	2명	

※ 기준 인원이 초과할 경우 추가인원 내에서만 입실가능

**【별표2】**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시설 사용료**

1. 일반객실

(단위:원)

시 기	실	영등포구민 (영등포구 소재 공공기관·단체) 및 청소년야영장 소재지 주민	타지역 주민	비 고
성수기 및 주말	4인	50,000	85,000	성수기: 7.15.~8.25.  주말: 금~토 및 공휴일 전일
	6인	80,000	136,000	
비 수 기 (성수기, 주말 외)	4인	40,000	68,000	
	6인	60,000	102,000	

※ 비고

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를 말한다.(성수기 기준 변동 시 예약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
2. “주말”이란 금요일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전 날을 말한다.

3. 사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한다.
4. 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입실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5. 침구류(이불, 요, 베개 등)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1세트당 5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6. 다목적실 및 세미나실 사용료는 청소년단체의 수련활동 극대화 및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시설

(단위:원)

시 설	구 분	기 준	이용요금	비 고
야영장(테 크) 야영장(글램핑)	개소	1박	10,000	타지역 주민
			50,000	17,000 타지역 주민 85,000
다목적실	실	전 일 4시간 2시간	200,000	
			100,000	
			60,000	
세미나실	실	전 일 4시간 2시간	120,000	
			60,000	
			40,000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3. 사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한다.
4. 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입실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5. 침구류(이불, 요, 베개 등)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1세트당 5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6. 다목적실 및 세미나실 사용료는 청소년단체의 수련활동 극대화 및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시설

(단위:원)

시 설	구 분	기 준	이용요금	비 고
야영장(테 크) 야영장(글램핑) 야영장(카라반)	개소	1박	10,000	타지역 주민
			50,000	17,000 타지역 주민 85,000
			50,000	타지역 주민 85,000
다목적실	실	전 일 4시간 2시간	200,000	
			100,000	
			60,000	
세미나실	실	전 일 4시간 2시간	120,000	
			60,000	
			40,000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